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128
----------	-----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12일

발 의 자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김광성, 남진삼의원

## 1. 제안이유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의 일부 개정(2023. 3. 2.)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반영을 위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안 제3조) 기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인 「별표」를 삭제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나. 예산조치: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국내 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를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u>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u> 지급한다.</p>	<p>제3조(국내 여비 지급) ----- ----- <u>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u> -----.</p>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
연락처	(033) 330 -2501